

백세시대의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Living to One Hundred: Old-age Criteria and
Policy Tasks*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과 평균수명의 증대에 따라 인생 백세시대를 염두에 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사회에서의 위상을 정립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사회의 연령범주와 연령규범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추상적인 논의부터 정책대상자를 규정하는 연령기준으로 65세라는 기준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포괄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서는 고령사회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 사회구성원리로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가 우리사회의 고령사회와의 선택적 친화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를 통하여 노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를 위해 필요한 논점을 정리해보고 그러한 논의들이 고령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¹⁾.

1. 노화·노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노화의 가치중립성과 다층성

노화는 인생에 있어 노년기라는 특정시기를 일컫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출생하여 죽음에 이르는 전반적인 변화를 말하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다.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에서

이해되던 노화가 노년기가 다른 단계와 구분되는 삶의 한 단계로 인식된 것은 20세기로, 산업화의 진전과 노령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작되었다²⁾.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라는 세가지 면의 변화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변화인 노화는 개인에 따라서, 또한 개인 내에 있어서도 진행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간 및 개인

1)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의 김수봉 연구위원, 선우덕 연구위원, 오영희 부연구위원, 이윤경 부연구위원, 박보미 연구원, 이은진 연구원, 유혜영 전연구원에 감사의 뜻을 표함.

2) 산업화와 함께 특정 삶의 단계에서는 특정활동을 해야 하는 삶의 '연대기화'(chronologization)나 '생애주기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life course)가 시작된 것임(Kohli & Rein, 1991). 은퇴와 사회보장수급 개시라고 하는 제도에 의하여 중년기와 노년기가 구분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가정과 일터의 분리의 심화, 일터와 가족 내에서의 연령분리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음.

내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³⁾.

2) 연령규범과 연령차별주의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역할이나 행동을 지칭하는 연령규범(age norm)은 복식, 품행 등 일상생활에 대한 행동양식 뿐만 아니라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포기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제한한다⁴⁾. 이러한 연령규범에 연령에 의한 차별 현상(ageism)의 하나로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을 담고 있다면 이는 연령차별주의로 이어진다⁵⁾. 연령에 의한 차별을 지칭하는 연령차별주의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는 달리, 연령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되고 차별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연령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에 대한 믿음과 태도로 특정한 집단을 역연령적 기준에 의해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⁶⁾.

연령규범은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와 시대에 따라 노인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변화하게 되고 사회나 가정에서의 지위나 대우도 변화하여,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억압과 편견,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 노인의 삶의 현황

1) 연령군별 한국노인의 삶의 현황

2008년에 실시된 노인실태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노인의 삶의 현황을 연령군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⁷⁾. 일반 특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으며, 연령군별 교육수준의 차이가 커 75~79세군에서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 가구유형의 경우 65~69세(초기노인)가 노인부부끼리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중후기(75~79세, 80세 이상)로 갈수록 노인독신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경제 및 소득과 관련해서는 연령별 월 가구소득의 경우 중후기 노인(75세 이상)에서 5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가 많은 편이며, 가족 및 사회관계의 경우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형제·자매나 가까운 친척은 초기노인에 비해 중후기 노인에서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형제·자매의 사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까운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은 초기노인이 중후기노인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의 경우 연령군별 차이가 확연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종사 직종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

3) 장인협·최성재(200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4) Atchley(2001). Social Forces and Aging(9th Ed.) NY: Wadsworth.

5) Butler, R.(1987). Ageism, The Encyclopedia of Aging. NY: John Wiley. Palmore(1990). Ageism, Springer Publishing Company.

6) 김옥(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연령차별주의, 사회복지정책, 14, pp.97~118.

7)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2009). 2008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09.

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으로는 초기노인에서 관리자, 기능원 관련 기능종사자가 다소 높고, 중후기노인에서 농림어업 기능종사자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한편, 사회참여와 관련해서는 단체 활동이나 자원봉사 참여율은 초기노인에서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평생교육에서는 중후기노인의 참여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및 기능상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의 경우 초기노인에서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고, 중후기노인에서는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

이 높다. 그러나 실제로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만 초기노인에서 다소 낮은 수준이고 당뇨병, 뇌졸중, 암유병률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한편, 기능상태의 경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걷기/방밖으로 나가기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나 집안일하기, 물건사기 등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75세 이후로 증가하며 80세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표 1. 연령군별 일반특성

구분	정규교육 경험율	50만원 이하 가구소득자 비율	가구유형			사회적 관계 유지율		사회참여			
			노인 독신	노인 부부	자녀동거 및 기타	생존 형제·자매	가까운 친구·이웃	참여율		경험율	
								경제활동	단체활동	평생교육	자원봉사
65~69세	19.7	20.8	12.6	55.6	31.8	88.7	77.4	39.9	78.6	11.2	11.9
70~74세	27.7	29.4	19.6	52.1	28.2	85.0	75.0	32.0	77.4	15.3	11.1
75~79세	42.1	35.7	27.6	39.9	32.4	74.7	69.9	23.6	72.9	15.8	8.4
80세 이상	35.4	39.6	28.3	25.4	46.4	57.7	59.8	10.1	61.3	12.3	6.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2009), 2008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표 2. 연령군별 건강 및 기능상태

구분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율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좋음	보통	나쁨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암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걷기/방밖나가기	화장실이용	집안일하기	전화이용하기	물건사기	교통수단이용
65~69세	31.6	14.8	53.7	42.7	17.3	5.8	3.1	4.8	2.2	1.3	1.1	1.1	6.1	4.8	6.0	6.6
70~74세	23.8	15.1	61.1	48.2	17.5	7.2	3.5	6.7	3.8	2.3	2.2	2.1	9.4	10.1	8.3	11.0
75~79세	17.1	14.6	68.3	52.0	16.7	6.8	2.5	11.0	5.1	3.0	2.8	2.9	15.8	17.4	15.8	16.4
80세 이상	16.5	14.1	69.4	49.8	11.4	7.6	1.6	21.0	10.7	7.3	7.1	7.3	29.2	36.8	32.1	36.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2009), 2008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 한국노인의 삶의 현황 국제비교

한국노인의 삶의 현황의 부정적 측면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의 경우 65~74세군의 경우 59.8, 75세 이상의 경우 97.3으로 미국의 12.5와 16.8, 일본의 28.8과 29.6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또한 15~24세군의 9.3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미국이나 일본에서 발견되는 연령군별 차이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빈곤율⁸⁾의 경우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 45.1%로 아동 빈곤율의 10.2%에 비하여 약 3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아동의 경우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에 비하여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한국노인의 경제상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57.8로 미국의 19.1이나 일본의 17.0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25~64세 연령군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이 25.3으로 노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노인이 OECD국가의 노인에 비하여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낮고, 한국 내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인구집단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을 살펴보면, 최근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8.3%로 높고 이와 같은 경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1994년에는 ‘64세 미만’이 노인이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2008년에는 ‘64세 미만’이라는 응답률은 7.6%에 불과하며 ‘70세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68.3%로 1994년과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다양한 연령군이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를 살펴보면 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70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사회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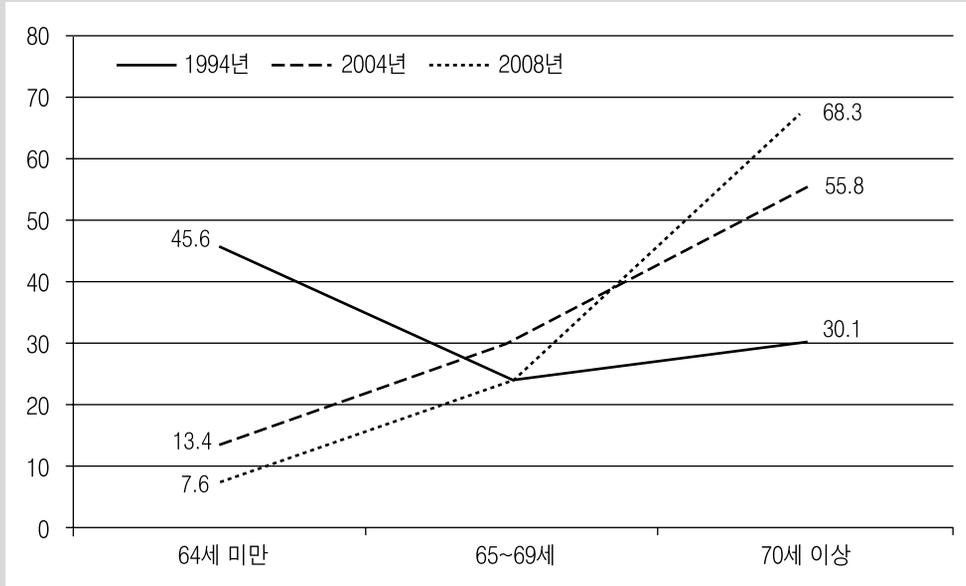
표 3. 노인의 삶의 질 현황 국제비교

구분	자살률(명/10만명)			빈곤율		교통사고 사망률(명/10만명)	
	15~24세	65~74세	75세 이상	아동	65+	25~64세	65+
한국	9.3	59.8	97.3	10.2	45.1	25.3	57.8
OECD 평균	-	-	-	12.4	13.3	-	-
미국	10.0	12.5	16.8	-	-	15.4	19.1
일본	14.1	28.8	29.6	-	-	6.6	17.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OECD 사회통계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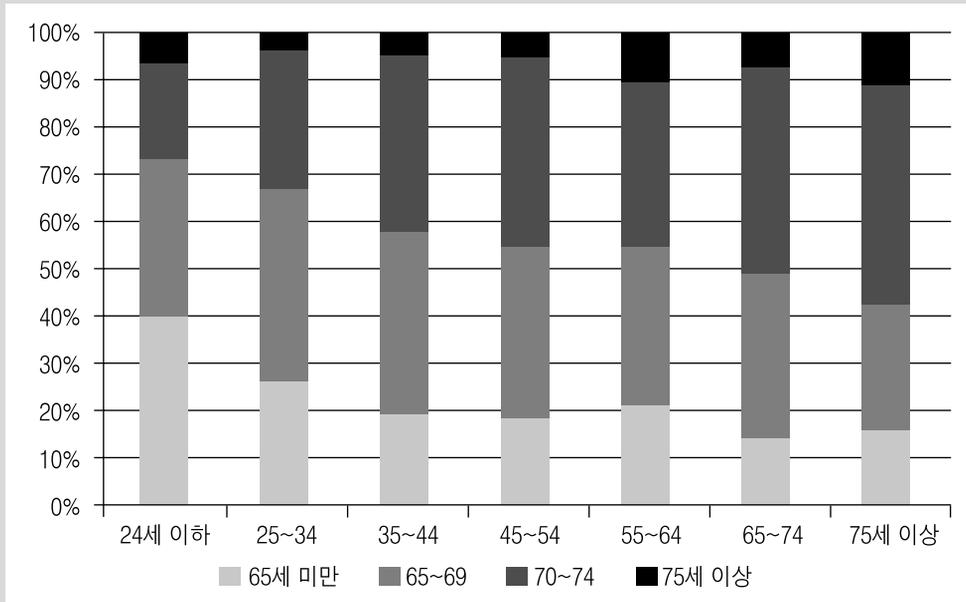
8) OECD는 빈곤을 가처분 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림 1. 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자료: 각년도 노인실태조사(1994, 1998, 2004, 2008년 조사 자료)

그림 2. 일반국민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자료: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의 약 1/2이 부정적인 스트레오 타입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는 영역별 차이가 있어 경제적 영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장 높아 59.3%이며, 정서적 영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낮아 48.6%이다⁹⁾. 또한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련한 조사에 의하면 이 또한 독립적이며 긍정적 규범과 동시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규범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¹⁰⁾.

상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 제재나 처벌 또는 불이익의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고용관련 연령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법에 노인에 대한 정확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노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법령과 ‘노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의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연령기준을 적시하고 있는 법령으로 구분된다.

3.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에 나타난 노인의 정의

1) 법에 나타난 노인의 정의

실정법상 연령기준은 복지서비스의 수혜대

2) 정책대상자로서의 노인의 정의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에 제시되고 있는 사업내용별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65세 또는 60세이다.

표 4. 법령에 나타난 노인의 연령 규정

법령	대상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 65세
도로교통법	노인: 65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55세 이상,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도로교통법	노인: 65세
기초노령연금법	정책대상자: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대상	65세 이상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65세 이상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5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65세 이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65세 이상

9)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이금룡(2005).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 26, No.1, pp.143~159.

표 5. 법령에 나타난 노인의 연령 규정

사업명		자격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등급판정결과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건강 보장	○ 치매상담센터 운영	60세 이상	- 치매노인과 그 가족
	○ 치매조기검진사업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 건강진단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중 희망자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60세 이상	- 기초생활자수급자, 시·도지사가 선정한 저소득층 노인 중 희망자
소득 보장	○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 소득 및 재산인정액이 정부가 정하는 기준 이하의 자(노인의 약 60%)
	○ 노인일자리사업	65세 이상	- 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
사회 서비스 제공	○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65세 이상	-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등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 노인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 노인복지관 등	65세 이상 60세 이상	-
	○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60세 이상	-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경로우대제 (철도,전철,국·공립공원 등)	65세 이상	-

4. 노인 연령기준관련 국제 동향

국제기구에서 노인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가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와 발간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UN의 경우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회원국을 고려하여 60세 이상에 대한 통계도 많이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EU의 경우도 노인인구비율,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교통사고 사망률, 자살률, 장기요양 관련 등 많은 지표 산출에 있어 노인 인구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도화된 노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잣대 중 하나인 공적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은퇴연령을 살펴보면 58~67세까지 수급개시연령이 다양하며, 실제 은퇴연령 또한 54.5~75.0세까지로 다양하다. 이러한 공적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은퇴연령은 평균수명과 같은 인구학적 요건보다는 각 국가의 재정상황, 노동시장 여건,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또한 실제 노동시

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시점과 평균수명간에는 관련성이 없다.

OECD 국가는 평균 은퇴 후 남자는 12.0년을 여자는 18.9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은퇴연령과 평균수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평균수명은 증가했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은퇴후 보내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은퇴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학술연구에서의 노인연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연구의 절대 다수는 65세를 노인의 기점으로 삼고 있으나, 노인내에서의 연령군 구분에는 학자간의 다양성이 존재한다.¹¹⁾

표 6. OECD국가들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노동시장 은퇴연령

국가	총 인구 (백만명)	65세 이상 인구 비율	부양비*	연금수급 개시연령		실제 은퇴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OECD	-	-	-	-	-	63.5	62.3
멕시코	110.6	6.6	52.7	65	65	73.0	75.0
한국	48.7	11.3	97.4	60	60	71.2	67.9
일본	127.8	22.5	56.0	65	65	69.5	66.5
포르투갈	10.7	13.5	39.4	65	60	66.6	65.5
아이슬란드	0.33	11.8	47.3	67	67	68.9	65.3
아일랜드	4.6	11.4	47.3	65	65	65.6	64.9
터키	77.7	5.9	47.3	60	58	63.5	64.3
스위스	7.6	17.3	48.0	65	64	65.2	64.1
미국	317.6	13.0	49.7	66	66	64.6	63.9
뉴질랜드	4.3	13.0	49.7	65	65	66.5	63.9
노르웨이	4.9	15.0	51.0	67	67	64.2	63.2
스페인	45.3	17.2	47.3	65	65	61.4	63.1
스웨덴	9.3	18.3	53.4	65	65	65.7	62.9
호주	21.4	14.2	48.6	65	63	64.4	62.2
영국	61.9	16.6	51.4	65	60	63.2	61.9
캐나다	33.9	14.1	43.8	65	65	63.3	61.9
네덜란드	16.7	15.4	49.2	65	65	61.6	61.3
덴마크	5.5	16.7	53.1	65	65	63.5	61.3
핀란드	5.3	17.2	50.9	65	65	60.2	61.0
독일	82.1	20.5	51.1	65	65	62.1	61.0
그리스	11.2	18.3	48.2	65	60	62.4	60.9

11) 조경환, 노용균(1996). 미국 노인학회지 1990~1994 년 사이에 나타난 연령 구분법, 가정의학회지 Jul, 17(7) pp.554~569.

〈표 6〉 계속

국가	총 인구 (백만명)	65세 이상 인구 비율	부양비*	연금수급 개시연령		실제 은퇴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탈리아	60.1	20.4	52.9	65	60	60.8	60.8
룩셈부르크	0.49	14.0	46.4	65	65	59.8	60.3
프랑스	62.6	17.0	54.7	60	60	58.7	59.5
체코	10.4	15.3	41.5	62.2	60.7	62.2	58.5
벨기에	10.7	17.4	51.9	65	65	59.6	58.3
헝가리	10.0	16.4	45.2	62	62	59.7	58.2
오스트리아	8.4	17.6	47.7	65	60	58.9	57.9
폴란드	38.0	13.5	39.4	65	60	61.4	57.7
슬로바키아	5.4	12.3	37.8	62	62	59.3	54.5

주: 부양비 = {(0~1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자료: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2010 Europe, 2009 America, 2008 Asia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표 7. OECD국가의 은퇴연령과 평균수명

구 분		남자	여자
OECD 평균	실제 은퇴연령	63.5	62.3
	공식 은퇴연령	64.1	62.9
	평균수명	75.5	81.2
	공식과 실제 은퇴연령의 차이	-0.6	-0.6
	평균수명과 실제 은퇴연령의 차이	12.0	18.9

자료: OECD Social Indicators Version 1

표 8. 연도별 은퇴연령, 기대수명, 은퇴기간(남자기준)

연도	중위 은퇴연령	기대수명	은퇴기간
1950	66.9년	65.5년	0년
1960	65.2년	66.8년	1.6년
1970	64.0년	67.0년	3.0년
1980	63.0년	70.1년	7.1년
1990	62.6년	71.8년	9.2년
2000	62.3년	74.1년	11.8년
2005	61.7년	75.2년	13.5년

자료: '윤가현(2010),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고령자의 정의, '고령자란' 심포지엄 자료집, p.45' 재인용.

5. 정책적 함의

이상과 같은 다각적인 검토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노화는 가치중립적이며 다층적인 변화로 개인별 차이가 발생하지만, 제도상 정책대상자로서의 노인은 역연령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준연령은 65세가 다수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책대상자로서의 노인의 연령기준은 대부분 65세이며 경우에 따라 60세부터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삶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노인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삶의 현황을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삶의 영역별로 차이가 있는 영역과 차이가 없는 영역이 혼재하고 있다.

셋째, 사회구성원이나 노인이 보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은 계속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그러한 부정적인 연령집단에 속하고 싶어하지 않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 기초해 볼 때 기회의 제공에 있어서의 연령통합성 제고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1)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성 제고

인생 백세시대에 적절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연령에 관한 논의에 앞서 연령이 진입장벽으로 이용되지 않고, 상이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¹²⁾. 이를 통하여 구조적인 연령장벽이 없을 때 각 구조 속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포함될 것이며, 동일한 조직 내에서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이 빈번히 접촉할 때 연령 경계가 더 유연해질 것이다.

연령장벽이 없다고 하는 ‘유연한 연령기준’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연령에 의하여 특정 사회적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 수행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유연한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령통합적 사회에서는 교육, 일, 가족시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생애동안 조정하여 배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체계가 평생동안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의 전환과 일터에서의 연령장벽의 유연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가 요구된다. 노인을 무조건 ‘비생산적’으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인의 긍정적인 삶을

12) Riley et al.(1994) Age and Structural Lag. John Wiley & Sons.

부각시키거나, 교과목에서 연령차별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세대간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연령간 접촉을 증대시키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노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의 질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 호칭의 사용 또한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 노화를 강조하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보다 사회적 관계 혹은 정신적 성숙을 가리키는 명칭(예: 성숙인, 어르신 등)을 사용할 때 청년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2) 정책대상자 선정 기준의 유연화

무엇보다 먼저 연령보다는 욕구에 기초하여 정책대상자를 선정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서비스를 할당하거나 배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욕구이기 때문이다¹⁴⁾. 우리사회에서 노인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취약한 사회적 위상을 갖고 있으며,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내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획일화되고 경직된 연령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유연한 연령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한 연령기준을 조정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변화와 우리사회의 재정적 능

력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1983년 노인보건법 제정에 따라 실시된 노인보건사업은 70세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하되, 65~70세 미만인 자인 경우는 장애인정을 받은 외상자에 한정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노인보건법 폐지와 함께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의료확보법)」 신설로 장수의료제도(후기고령자의료제도) 실시하면서 적용대상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를 기준으로 하되, 65~74세 이하는 일정한 장애상태에 있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자로 변경하였다. 한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욕구라는 기준에 기초하여 정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즉 연령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기초한 정책의 유연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획일화된 역연령이 아니라 노화의 다차원성을 반영한 정책대상자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연령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노인의 취약한 위상과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균형잡힌 논의를 위해서는 연령기준과 관련한 논의의 구조에 있어 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과 노인의 다양한 하위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

13) 김미애(2004). 60세 이상 인구의 명칭에 대한 대학생의 평가적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24(1), pp. 149~167.

14) George, V. and Wilding, P.(1976). Ideology and Social Welfar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6.

에서 UN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 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서는 참여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은 여성 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을 취약한 노인집단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 이들 집단에 대한 특별한 고

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령기준의 유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재정적 변화에 대한 검토,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에 기초한 판단이 이러한 논의의 경험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급
복지